

윤리강령

2022년 10월 31일 제정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윤리강령(이하 "강령"이라 한다)은 두나무앤파트너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투명한 윤리경영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 및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, 기업가치 증대를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- ①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② 회사는 이 강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윤리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 2 장 주주에 대한 윤리

제 3 조(주주의 이익보호)

- ①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한다.
- ②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.
- ③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.
- ④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금융사고 등 제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.
- ⑤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.

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
제 4 조(임직원 존중과 지원)

회사는 임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, 각 임직원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.

제 5 조(공정한 대우)

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제 6 조(창의적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)

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업무환경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삶의 질 향상)

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모든 임직원이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련 법령, 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임직원의 복무윤리

제 8 조(임직원의 기본윤리)

①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.

제 9 조(비전공유)

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이해한다.

제 10 조(자기계발)

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.

제 11 조(공정한 직무수행)

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의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2 조(이해상충 회피)

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주주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 회사의 업무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개인, 회사간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부당이득 수수 금지)

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·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.

제 14 조(공·사 구분)

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제 15 조(임직원 상호 관계)

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·하간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갖추고,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학벌·성별·종교·혈연·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
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등 비인격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6 조(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)

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·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 취득정보를 관련 법규와 이 강령 및 내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
④ 회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
제 5 장 투자대상회사 및 경쟁사에 대한 윤리

제 17 조(거래법규 준수)

임직원은 모든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
제 18 조(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윤리)

- ① 임직원은 투자대상회사를 항상 존중하고 동등한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대하여야 한다.
- ② 임직원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이 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④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
제 19 조(자유경쟁추구)

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
제 6 장 사회에 대한 윤리

제 20 조(사회발전에 기여)

- ① 임직원은 지속적인 혁신과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.

제 21 조(부당한 정치활동 금지)

- ①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, 정당·정치인·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안전 및 위험예방)

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 23 조(환경보호)

임직원은 환경보호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,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4 조(노사화합)

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5 조(국제경영규범 준수)

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 26 조(준수의무와 책임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-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·감독할 책임이 있다.

제 27 조(포상 및 징계)

- ① 회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을 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강령은 2022 년 10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.